

금융위원회	보도 참고자료					•생산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	배포	2017.9.12.(화)	•포용적 금융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최 유 삼(02-2100-2601)		담 당 자		윤 송 이 사무관 (02-2100-2517)	

제 목 : 팬오션㈜ 주식에 대한 증선위 조치 사유

농협은행(주)이 담보로 설정한 팬오션㈜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했다는 주장(2017.9.12. 세계일보 기사)과 관련한 증권선물 위원회 판단 근거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림

- □ 2015.2.4.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팬오션㈜ 주식에 대해 조치한 것임을 알려드림
- □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라 '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'에 해당 하기 위해서는 미공개인 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해야 하지만,
- 2013.06.17. 팬오션㈜에 대한 희생절차 개시로 인해 팬오션㈜에 대한 감자 조치와 최소 감자 비율은 관련 법규^{*}에 명시됨으로써 시장참가자 누구나 예상가능한 정보로서
 - *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3항에 의거하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발행주식의 2분의 1이상을 소각하거나 2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도록 규정
- 이미 널리 알려진 시장정보나 예측가능한 일반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**일반정보에 해당**

-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는 **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** 영향을 미치는 "중요정보"에 해당하지 않음
- □ 한편 2013.09.05 「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계인집회에 팬오션㈜ 조사보고서가 제출됨으로써 동 정보는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열람·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는바,
- 동 조사보고서에 근거한 주식 매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**적법하게 작성 배포된 자료에 따른 투자판단** 이라고 볼 수 있음



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